공고 제 17 호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3년 02월 10일

부안읍장 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허 *의	허 *석 2002-10-17	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월신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3-02-10